

#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

## 가. 감사개요

■ 감사기간 : 2014. 6. 2. ~ 6. 13. (8일간)

■ 감사반 : 감사담당관 등 6명 (실지감사)

■ 감사내용

○ 2010년 ~ 2014년 현재까지 기관 운영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## 나. 감사결과

(단위 : 천 원, 건)

합 계		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행정상 조치					모범 사례	현지 지정
							시정	주의	개선	권고	통보		
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
13							1	6	2	1	1	1	1

※ 첨부서류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# 감사처분 요구내용

(한국문화관광연구원)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	<p>○ 직원 복무 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복무규정」 등 상위법의 근거 없이 「외출등록부 대외활동 관련 업무처리계획」을 만들어 개인대외활동과 관련한 외출을 1개월 24시간(개인용무 외출 포함)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, 직원은 동 개인대외활동을 활용하여 대학출강, 외부 기관 세미나, 자문회의, 토론회 등에 참석</li> <li>- 지각·조퇴·외출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규정 미비 및 공제 미실시, 외출 후 퇴근 허용, 조퇴 미관리 등 복무관리 부적정</li> </ul>	<p>○ 시정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대외활동 외출을 폐지하고, 복무규정을 정비하여 규정에 맞게 복무관리를 하도록 ‘시정’ 요구</li> </ul>
2	<p>○ 국고보조사업 정산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나, 국고보조사업 25건(‘10~’13) 6,955백만 원에 대해 기간 내 정산 미보고로 정산지연</li> <li>- 국고보조사업 관리 이원화로 정산 지연 및 사후 관리 부실</li> <li>· 연구실은 사업비 집행, 정산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고, 행정실은 연구실에 증빙서류 제공 및 국회 등 외부기관 정산 관련 자료 제출 등 사후 관리</li> </ul>	<p>○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산 보고를 철저히 하고,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조정하도록 ‘주의’ 요구</li> </ul>
3	<p>○ 연구용역사업 추진 절차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연구사업기본규정」 제11조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책임자 선정 및 연구 과제를 배정하여야 하나, ‘10년부터 ‘13년까지 총 587건을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연구실장이 임의로 연구책임자 및 연구과제 선정</li> <li>- 「연구사업기본규정」 제19조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원장 보고와 함께 연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간보고서를 종합 검토하여야 하나, ‘10년부터 ‘13년까지 총 217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9개월 이상 소요되는 중기과제 16건에 대해서만 중간보고서 검토</li> </ul>	<p>○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연구사업기본규정」에 따라 연구책임자 선정 및 연구과제 배정, 연구 결과 평가를 추진하도록 ‘주의’ 요구</li> </ul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															
4	<p>○ 위탁연구용역사업 계약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국가계약법」 제30조 및 「회계규정」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'10년부터 '13년까지 24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33건을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서면견적서를 제출받아 체결하였음</li> <li>·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위탁연구 용역사업 평균 낙찰률(97.2%)이 서울지방조달청 일반경쟁방식 연구용역 체결 평균낙찰률(94.4%)과 비교할 때 더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어 기관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 초래</li> </ul>	<p>○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회계규정」에 따라 계약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관련자 '주의' 요구</li> </ul>															
5	<p>○ 특별휴직자 연구 결과 보고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원 인사규정 제28조 및 특별휴직 내부지침에 따라 특별휴직자는 휴직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나, 약 1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는 등 관련규정 위반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52 1149 1098 1346"> <thead> <tr> <th>연 도</th> <th>성 명</th> <th>휴 직 기 간</th> <th>대상기관</th> <th>결과보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10</td> <td>○○○ (연구위원)</td> <td>'11.3.1~'12.2.29</td> <td>◇◇◇ 관광 종합연구소</td> <td>'13.4.1.30</td> </tr> <tr> <td>2011</td> <td>◇◇◇ (선임연구위원)</td> <td>'12.3.1~'13.2.28</td> <td>○○○○문화 정책연구소</td> <td>'14.5.2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 도	성 명	휴 직 기 간	대상기관	결과보고	2010	○○○ (연구위원)	'11.3.1~'12.2.29	◇◇◇ 관광 종합연구소	'13.4.1.30	2011	◇◇◇ (선임연구위원)	'12.3.1~'13.2.28	○○○○문화 정책연구소	'14.5.22	<p>○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기간 미준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계자 '주의' 요구</li> </ul>
연 도	성 명	휴 직 기 간	대상기관	결과보고													
2010	○○○ (연구위원)	'11.3.1~'12.2.29	◇◇◇ 관광 종합연구소	'13.4.1.30													
2011	◇◇◇ (선임연구위원)	'12.3.1~'13.2.28	○○○○문화 정책연구소	'14.5.22													
6	<p>○ 자료 구입 및 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원의 소장 및 대출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장자료와 동일자료를 중복 구입</li> <li>· 2010~2014. 6. 13. 3권 이상 복본을 구입한 자료는 총 90종, 125권</li> <li>- 대출자료를 대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납 받지 않고 동 자료를 중복 구입하는 등 자료를 부적정하게 관리</li> <li>· 2010~2014. 6. 13. 3권 이상 복본을 구입한 90종 자료중 대출기한을 1개월 이상 경과하여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 자료는 총 106권에 이룸('14.6.13.기준)</li> </ul>	<p>○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료구입시 사전에 소장 및 대출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불필요하게 자료를 중복하여 구입하고, '자료관리규칙' 제20조를 위반하여 소장자료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에 대하여 '주의' 요구</li> </ul>															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7	<p>○ 기본연구과제 예산집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한국문화관광연구원 회계규정」 제27조에 따르면, 예산은 예산과목별로 확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,</li> <li>- 201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금 연구사업비(240,000천 원) 중 기본연구사업 기본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여비 2,270천 원(14건) 및 업무추진비 9,829천 원(148건)을 부적정하게 임의로 초과하여 집행</li> </ul>	<p>○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것에 대하여 ‘주의’ 요구</li> </ul>
8	<p>○ 소속직원 사례비 지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획재정부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라 소속 직원은 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나</li> <li>• 자체 「예산통제지침」에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기관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정책논문집 및 웹진 기고료, 기관 주최 토론회 및 행사에 대한 행사진행비 및 사례비 등을 지급</li> </ul>	<p>○ 개선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라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‘개선’ 요구</li> </ul>
9	<p>○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공기업,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」은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개인별 적립 현황 및 사용 실적 등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</li> </ul>	<p>○ 개선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는 등 공무항공 마일리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‘개선’ 요구</li> </ul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10	<p>○ 근무시간 내 외부출강 관리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인사규정」 제25조 및 복무규정 제9조는 겸직허가 및 외부출강 요건을 원장의 허가만 받도록 하고 있고 출강횟수, 시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.</li> <li>- ‘10년부터 ‘14까지 연 출강인원 94명 중 77명(81.9%)이 근무시간 내 외부출강을 실시하고 있어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</li> </ul>	<p>○ 권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외부출강을 실시토록 하고 외부출강 세부 요건을 마련토록 ‘권고’ 조치</li> </ul>
11	<p>○ 정보통신실 DB자료 재난대책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」 제9조 및 「문체부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」 제85조에 따르면, 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위치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재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으나,</li> <li>- 정책연구보고서와 관광분야 전문(관광지식정보시스템) DB자료 등 총 126,079건의 자료를 연구원 정보통신실내에 보관하고 있어, 화재 등의 재난상황 발생 시 주요 데이터 손실에 대비하여 원격지 백업 구축이 필요</li> </ul>	<p>○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난상황에 대비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‘통보’ 조치</li> </ul>
12	<p>○ 대국민 중심의 관광통계 생산과 과학적 관광정책 선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홈페이지,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관광관련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</li> <li>- 관광통계, 정책&amp;연구, 관광자원 등 7만 4천여건의 관광지식 정보를 DB화함으로써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으로부터 2010년 통계품질 우수기관 선정 및 2011년 골드클래스 통계품질 인증을 받는 등 정부 3.0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</li> </ul>	<p>○ 통보(모범사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관광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광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에 기여한 관계자에 포상 등 격려 조치</li> </ul>
13	<p>○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원재활법」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나, 법에 따른 의무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(‘11년~13년, 46,364천원)</li> </ul>	<p>○ 현지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규정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‘현지시정’ 조치</li> </ul>